대구대학교 지역기업경영연구소와
한국섬유개발연구원과의 상호업무 협약서

제 1조 목 적

대구대학교 지역기업경영연구소와 한국섬유개발원은 21세기 한국섬유산업을 생활문화형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**정보교환과 공동연구를 위해 서로 협력하여 업계의 공동이익을 도모**하기 위해 상호협력한다.

제 2조 협 약 의 범 위

공동연구 참여기관은 아래의 목적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기 위해 상호 협의하여 협약을 체결한다.

-중소섬유업체의 공통 애로기술개발
-섬유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고감성 기술개발
-섬유기계 및 공정의 자동화 기술개발
-섬유산업의 환경 친화적 기술개발
-선진기술 및 정보의 공유화

제 3조 참 여 연 구 원 활 동

참여연구원은 협약된 사업의 공동연구를 위하여 공동연구 참여기관을 서로 방문함에 있어 제재를 받지 않도록 하며, 이에 상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한다.

제 4조 연 구 기 자 재 활 용

(1)공동연구 참여기관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관련이 있는 각 기관 소유의 연구기자재 및 기타 연구와 관련된 모든 시설물 등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.

(2)참여연구원은 소속기관 이외의 기관(업체)이 갖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물 등을 이용할 때는 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해당기관의 협조를 받아 시험을 수행한다.

제 5조 연 구 개 발 비

공동연구에 소요되는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별로 계약체결시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.

제 6조 기 밀 유 지 등

공동연구 참여기관은 위 협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데이터 및 유형적 발생품 등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제 3자에게 그 기밀유지 의무를 지킨다.

기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지 못한 공동참여 연구기관은 이에 의해 발생되는 모든 행정적·법적인 책임을 진다.

제 7조 협 약 의 변 경

협약내용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.

제 8조 협 약 의 해 약

(1)공동연구 참여기관 중 어느 한쪽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고 생각될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(2)기술개발 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기술개발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완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협의하여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(3)천재지변과 같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기술개발 사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.

제 9조 산 업 재 산 권 및 발 생 품 귀 속

본 개발사업의 수행중에 발생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 및 연구개발의 성과로 취득하는 지적소유권(산업재산권:예), 특허(의장등록, 실용실안), 유형적 발생품, 시작품 및 연구보고서의 판권 및 소유권한에 대한 사항은 공동연구 참여기관 서로가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한다.

제 10조 기 타

본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공동연구 참여기관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1997년 11월 20일

서명 박윤흔

대 구 대 학 교

총 장 박 윤 흔

서명 柳在善

한국섬유개발연구원

원 장 柳 在 善

서명 김정섭

지역기업경영연구소

담 당 교 수 김 정 섭